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편

제1장 총칙

(적용범위)

- 제1조 당사(이하 "당사")가 여행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에 관한 계약(이하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 2 당사(이하 "당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동시에 여행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면에 의해 특약을 체결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제2조 이 약관에서 "모집형 기획여행"이란 당사가 여행자를 모집을 위해 미리 여행의 목적지 및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운송 또는 숙박 서비스의 내용과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여행대금의 금액을 정한 여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 이에 따라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 2 이 약관에서 "국내여행"이란 일본 국내만의 여행을 말하며, "해외여행"이란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말합니다.
- 3 본 편에서 "통신계약"이란 당사가 당사 또는 당사의 모집형 기획여행을 당사를 대리해 판매하는 회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사(이하 "제휴사")의 카드회원과 사이에서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신청을 받아 체결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으로서, 당사가 여행자에게 보유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른 여행대금 등과 관련된 채권 또는 채무를 해당 채권 또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하는 날 이후에 별도 정하는 제휴사 카드회원약관에 따라 결제하는 것에 대해 여행자가 미리 승낙하고, 또한 해당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여행대금을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후단, 제19조 제2항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말합니다.
- 4 이 약관에서 "카드이용일"이란 여행자 또는 당사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른 여행대금 등의 지급 또는 환불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여행계약 내용)

- 제3조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여행자가 당사가 정하는 여행일정에 따라 운송·숙박시설 등이 제공되는 운송, 숙박 기타 여행에 관한 서비스(이하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배하고 여정을 관리하는 일을 맡습니다.

(수배대행자)

- 제4조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이행시 전부 또는 일부를 일본 국내 또는 일본 국외의 다른 여행업자, 수배업으로 하는 자 기타 보조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제2장 계약의 체결

(계약의 신청)

- 제5조 당사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이하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당사가 별도 정하는 금액의 신청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2 당사에 통신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여행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고자 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의 명칭, 여행개시일, 회원번호 기타 사항(이하 다음 조에서 “회원번호 등”)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제1항의 신청금은 여행대금 또는 취소료, 위약금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 4 모집형 기획여행 참가 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여행자는 계약 신청 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합니다.
 - 5 전항의 신청에 따라 당사가 여행자를 위해 강구한 특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전화 등에 의한 예약)

- 제6조 당사는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예약을 받습니다. 이 경우 예약시점에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며 여행자는 당사가 예약 승낙의 취지를 통지한 후 당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에 신청서와 신청금을 제출하거나 회원번호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 2 전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신청금을 제출한 경우 또는 회원번호 등을 통지한 경우,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 순위는 해당 예약 접수의 순위에 따르게 됩니다.
 - 3 여행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청금을 제출하지 않거나 회원번호 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예약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계약체결의 거부)

- 제7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당사가 미리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기타 참가 여행자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는 경우
 - (2) 응모여행자 인원수가 모집예정 인원수에 도달한 경우
 -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단체행동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 여행자가 보유하는 신용카드가 무효인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과 관련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사 카드회원약관에 따라 결제할 수 없는 경우
 - (5)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기업 또는 총회꾼 등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6) 여행자가 당사에게 폭력적인 요구행위, 부당한 요구행위, 거래에 관한 협박적인 언동 또는 폭력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7) 여행자가 소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해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8) 기타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성립시기)

제8조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제5조 제1항의 신청금을 수령한 때 성립됩니다.

- 2 통신계약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는 취지의 통지가 여행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됩니다.

(계약서면의 교부)

제9조 당사는 전조에 정하는 계약의 성립 후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계약서면”)을 교부합니다.

- 2 당사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라 수배한 여정을 관리할 의무를 지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전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바에 따릅니다.

(확정서면)

제10조 전조 제1항의 계약서면에 확정된 여행일정, 운송 또는 숙박시설의 명칭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면에서 이용 예정인 숙박시설 및 표시상 중요한 운송기관의 명칭을 한정, 열거하여 해당 계약서면을 교부한 후, 여행개시일 전일(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계산해서 소급해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여행개시일)까지의 해당 계약서면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들이 확정된 상황을 기재한 서면(이하 “확정서면”)을 교부합니다.

- 2 전항의 경우 수배상황의 확인을 희망하는 여행자로부터 문의가 있을 때에는, 확정서면의 교부 전이라도 당사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에 응답합니다.
- 3 제1항의 확정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사가 수배하고 여정을 관리할 의무를 지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해당 확정서면에 기재하는 바에 따라 특정됩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제11조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얻어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여행자에게 교부하는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면 또는 확정서면의 교부를 대신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하 본 조에서 “기재사항”)을 제공한 경우,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 2 전항의 경우로서 여행자의 사용과 관련되는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전적으로 해당 여행자를 위해 제공하는 것에 한정됨)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한 것을 확인합니다.

(여행대금)

제12조 여행자는 여행개시일까지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기일까지, 당사에게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금액의 여행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2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는 제휴사 카드에 의해 소정의 전표에 대하여 여행자의 서명 없이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금액의 여행대금을 지불 받습니다. 또한, 카드이용일은 여행계약 성립일로 합니다.

제3장 계약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제13조 당사는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시설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단, 관공서의 명령, 당초 운행계획에 따르지 않은 운송서비스 제공,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여행자에게 사전에 신속하게 해당 사유에 관여할 수 없는 이유 및 해당 사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 내용 기타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내용(이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부득이한 때에는 변경 후에 설명합니다.

(여행대금의 금액변경)

제14조 모집형 기획여행을 실시할 때 이용하는 운송기관에 대해 적용받는 운임·요금(이하 본 조에서 “적용운임·요금”)이 현저한 경제정세의 변화 등으로 인해 모집형 기획여행 모집 시 명시한 시점에 유효한 것으로 공시되어 있는 적용운임·요금에 비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정도를 크게 초과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당사는 그 증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 2 당사는 전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대금을 증액하는 때에는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계산해서 소급해 15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여행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 3 당사는 제1항이 정하는 적용운임·요금의 감액이 이루어질 때는 같은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소 금액만큼 여행대금을 감액합니다.
- 4 당사는 전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여행실시에 필요한 비용(해당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 서비스에 대한 취소료, 위약금 및 기타 이미 지불했거나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포함)의 감소 또는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비용의 증가가 운송·숙박시설 등이 해당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시설 등의 좌석, 객실 기타 제반 시설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계약내용 변경 시 그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5 당사는 운송·숙박시설 등의 이용인원에 따라 여행대금이 다르다는 취지를 계약서면에 기재한 경우로서,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해당 이용인원이 변경되었을 때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바에 따라 여행대금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교체)

- 제15조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는 당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2 여행자가 전항에서 정하는 당사의 승낙을 요구할 때는 당사 소정의 용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소정 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3 제1항의 계약상 지위의 양도는 당사의 승낙이 있을 때 효력이 생기고, 이후 여행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제3자

는 여행자의 해당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합니다.

제4장 계약의 해지

(여행자의 해지권)

- 제16조 여행자는 언제든지 별표 제1에서 정하는 취소료를 당사에 지불하고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통신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는 제휴사 카드에 따라 소정의 전표에 대한 여행자의 서명 없이 취소료를 지불 받습니다.
- 2 여행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행개시 전에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고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당사에 의해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다만, 그 변경이 별표 제2 상란(上欄)에 열거하는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 한합니다.
 -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대금이 증액된 경우
 - (3)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시설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단, 관공서의 명령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해지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매우 큰 경우
 - (4) 당사가 여행자에게 제10조 제1항의 기일까지 확정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 (5)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3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 해당 여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때 또는 당사가 그 사실을 알렸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고 여행 서비스의 해당 제공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4 전항의 경우 당사는 여행대금 중 여행 서비스의 해당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부분과 관련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다만, 전항의 경우가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해당 여행 서비스에 대해 취소료, 위약금 및 기타 이미 지불했거나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관련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당사의 해지권 등-여행개시 전의 해지)

- 제17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여행개시 전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가 당사가 미리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기타 참가 여행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2)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간병인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여행을 견딜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단체 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여행자가 계약내용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 (5) 여행자의 인원수가 계약서면에 기재한 최저행사인원에 미달된 경우
 - (6) 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서 필요한 강설량 등 여행실시조건으로 계약체결 시 명시된 것이 성취되지

않을 우려가 매우 큰 경우

- (7)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시설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단,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해지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매우 큰 경우
 - (8)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여행자가 보유한 신용카드가 무효가 되는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과 관련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사 카드회원약관에 따라 결제할 수 없게 된 경우
 - (9) 여행자가 제7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2 여행자가 제12조 제1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기일까지 여행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일의 다음 날에 여행자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여행자는 당사에게 전조 제1항에서 정하는 취소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3 당사는 제1항 제5호에 열거하는 사유에 따라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여행개시일 전날 부터 계산해서 소급해 국내여행의 경우는 13일째(당일여행에 대해서는 3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해외 여행의 경우는 23일째(별표 제1에서 규정하는 성수기 때 여행을 개시하는 것은 33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여행을 중단하는 취지를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당사의 해지권-여행개시 후 해지)

- 제18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여행개시 후라도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간병인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행의 지속을 견딜 수 없는 경우
 - (2) 여행자가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안내원 기타 인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당사 지시에 대한 위배, 이러한 자 또는 동행하는 다른 여행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단체행동의 규율을 어지럽히고 해당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방해하는 경우
 - (3) 여행자가 제7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 (4)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시설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단,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여행의 지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2 당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와 여행자 사이의 계약 관계는 미래에 대한 부분만 소멸됩니다. 이 경우 여행자가 이미 제공받은 여행 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3 전항의 경우 당사는 여행대금 중 여행자가 아직 그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금액에서 해당 여행 서비스에 대한 취소료, 위약금 기타 이미 지불했거나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관련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여행대금의 환불)

- 제19조 당사는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대금이 감액된 경우 또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로서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여행개시 전 해지에 따른 환불인 경우에는 해지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개시 후의 해지에

다른 환불인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종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 2 당사는 여행자와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대금이 감액된 경우 또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에 따라 통신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휴사 카드회원약관에 따라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개시 전의 해지에 따른 환불인 경우에는 해지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개시 후 해지에 따른 환불인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종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환불할 금액을 통지하며, 여행자에게 해당 통지를 한 날을 카드이용일로 합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27조 또는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 또는 당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 후 귀환 수배)

- 제20조 당사는 제1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여행개시 후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지한 경우 여행자의 요구에 따라 여행자가 해당 여행의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행 서비스의 수배를 제공합니다.
- 2 전항의 경우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5장 단체 · 그룹계약

(단체 · 그룹계약)

- 제21조 당사는 같은 코스를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이하 “계약책임자”)를 정해 신청한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에 대해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약책임자)

- 제22조 당사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책임자가 그 단체 · 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이하 “구성자”)의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단체 · 그룹과 관련된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는 해당 계약책임자와의 사이에서 진행합니다.
- 2 계약책임자는 당사가 정하는 날까지 구성자 명단을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3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구성자에 대해 실제로 부담하거나 장래에 부담하는 것이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단체 · 그룹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 여행개시 후에는 미리 계약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자를 계약책임자로 간주합니다.

제6장 여정관리

(여정관리)

- 제23조 당사는 여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행자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당사가 여행자와 이와 다른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여행자가 여행 중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른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2) 전호의 조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서비스를 수배할 것. 이 경우 여행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여행일정이 당초 여행일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 또한, 여행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여행 서비스가 당초 여행 서비스와 동일하도록 노력할 것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

(당사의 지시)

제24조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 여행종료까지의 기간 동안 단체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안내원 등의 업무)

제25조 당사는 여행의 내용에 따라 안내원 기타 인원을 동행시켜 제23조 각 호에 열거하는 업무 기타 해당 모집형 기획여행에 부수해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 2 전항의 안내원 기타 인원이 같은 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보호조치)

제26조 당사는 여행 중인 여행자가 질병, 상해 등으로 보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것이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하며, 여행자는 해당 비용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7장 책임

(당사의 책임)

제27조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이행시 당사 또는 당사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배를 대행하게 한 자(이하 “수배대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손해발생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2년 이내에 당사에게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2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시설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단,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당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당사는 수하물에 대해 발생한 제1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당사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해 여행자 1인당 15만 엔을 한도(당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외)로 배상합니다.

(특별보상)

- 제28조 당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별지 특별보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가 모집형 기획여행 참가 중에 그 생명, 신체 또는 수하물에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해 미리 규정한 금액의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2 전항의 손해에 대해 당사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책임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액의 한도에서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전항의 보상금은 해당 손해배상금으로 간주합니다.
 - 3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당사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전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는 보상금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감축합니다.
 - 4 당사의 모집형 기획여행 참여 중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여행대금을 받고 당사가 실시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서는 주된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내용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여정보증)

제29조 당사는 별표 제2 상란에 열거하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변경(운송·숙박시설 등이 해당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시설 등의 좌석, 방 기타 제반 시설의 부족이 발생한 것을 제외)을 제외)이 발생한 경우는 여행대금에 같은 표 하란에 기재된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변경보상금을 여행종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변경에 대해 당사에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한 변경

- 가. 천재지변
- 나. 전란
- 다. 폭동
- 라. 관공서 명령
- 마. 운송·숙박시설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단
- 바. 당초 운행계획에 따르지 않은 운송서비스 제공
- 사. 여행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해당 해지된 부분과 관련된 변경

- 2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변경보상금의 금액은 여행자 1명에 있어 하나의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 여행대금에 15% 이상의 당사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여행자 1명에 있어 하나의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변경보상금의 금액이 천엔 미만인 경우 당사는 변경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당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해당 변경에 대해 당사에게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명확해진 경우에는 여행자는 해당 변경과 관련된 변경보상금을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의 금액과 여행자가 반환해야 하는 변경보상금의 금액을 상계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여행자의 책임)

제30조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여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2 여행자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여행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내용에 대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3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기 위해 만일 계약서면과 다른 여행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는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그 사실을 당사, 당사의 수배대행자 또는 해당 여행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8장 변제업무보증금

(변제업무보증금)

제31조 당사는 일반사단법인 일본여행업협회(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초메 3번 3호)의 보증사원입니다.

- 2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자는 그 거래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전항의 일반사단법인 일본여행업협회가 공탁하고 있는 변제업무보증금으로부터 7,000만엔에 달할 때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당사는 여행업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단법인 일본여행업협회에 변제업무보증금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은 공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9장 일반조항

(언어)

제32조 이 약관은 일본어와 한국어로 작성되며, 양 언어 간 의미의 상충이 있을 경우 일본어가 우선합니다.

별표 제1 취소료(제16조 제1항 관련)

1. 국내여행에 관련된 취소료

구분	취소료
(1) 다음 항 이외의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계산해서 소급해 20일째(당일여행의 경우는 1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나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20% 이내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계산해서 소급해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다목부터 마목까지에서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30% 이내
여행개시일 전날에 해지하는 경우	여행대금의 40% 이내
여행개시 당일에 해지하는 경우(마목에서 열거하는 경우는 제외함)	여행대금의 50% 이내
여행개시 후 해지 또는 연락 없는 불참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2) 전세선박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해당선박에 관련된 취소료규정에 따릅니다.
비고: (1) 취소료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본 표의 적용시 “여행개시 후”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개시한 때” 이후를 말합니다.	

2. 해외여행에 관련된 취소료

구분	취소료
일본 출국 시 또는 귀국 시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다음 항에서 열거하는 여행계약은 제외함)	
가. 여행개시일이 성수기 여행인 경우로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계산해서 소급해 4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10% 이내
나.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계산해서 소급해 3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다목 및 라목에서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20% 이내
다. 여행개시일 전전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라목에서 열거하는 경우는 제외함)	여행대금의 50% 이내
라. 여행개시 후 해지 또는 연락 없는 불참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구분	취소료
(2) 전세항공기를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가.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계산해서 소급해 9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나목부 터 라목까지에서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20% 이내
나.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계산해서 소급해 3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다목 및 라목에서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50% 이내
다.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계산해서 소급해 2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라목에 서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80% 이내
라.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계산해서 소급해 3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해지 또는 연락 없는 불 참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3) 일본 출국 시 및 귀국 시 선박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해당 선박에 관련 된 취소료 규정에 따릅니다.
주: “성수기”란 12월 20일부터 1월 7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및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합니 다.	
비고: (1) 취소료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본 표의 적용시 “여행개시 후”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개시한	

별표 제2 변경보상금(제29조 제1항 관련)

변경보상금의 지급이 필요한 변경	1건 당 비율(%)	
	여행개시전	여행개시후
1.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개시일 또는 여행종료일의 변경	1 . 5	3 . 0
2. 계약서면에 기재한 입장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레스토랑 포함) 기타 여행 목적지 변경	1 . 0	2 . 0
3.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등급 또는 시설 보다 낮은 요금으로 변경(변경 후 등급 및 시설요금의 합계액이 계약서면에 기재한 등급 및 시설 해당 금액을 하회할 경우에 한함)	1 . 0	2 . 0
4.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 변경	1 . 0	2 . 0
5.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 여행개시지 공항 또는 여행종료지 공항의 다른 항공편으로 변경	1 . 0	2 . 0
6.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와 일본 국외 사이 직행편의 환승편 또는 경유편으로 변경	1 . 0	2 . 0
7.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시설의 종류 또는 명칭 변경	1 . 0	2 . 0
8.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시설의 객실 종류, 시설, 경관 기타 객실 조건 변경	1 . 0	2 . 0
9. 전 각 호에 열거하는 변경 중 계약서면의 투어 타이틀 중에 기재가 있었던 사항의 변경	2 . 5	5 . 0

주1. “여행개시 전”이란 해당 변경에 대해 여행개시일 전날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하며 “여행개시 후”란 해당 변경에 대해 여행개시 당일 이후에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2. 확정서면이 교부된 경우에는 “계약서면”으로 되어있는 것을 “확정서면”으로 대체한 후에 이 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면의 기재내용과 확정서면의 기재내용 사이 또는 확정서면의 기재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 서비스 내용 사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각각의 변경에 대해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3. 제3호 또는 제4호에 열거하는 변경과 관련된 운송기관이 숙박시설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경우는 1박당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4. 제4호에 열거하는 운송기관의 회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등급 또는 시설이 보다 높은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제4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열거하는 변경이 1승차선 등 또는 1박 중에서 복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1승차선 등 또는 1박당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6. 제9호에서 열거하는 변경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제9호에 따릅니다.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편

제1장 총칙

(적용범위)

- 제1조 당사자 여행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수주형 기획여행에 관한 계약(이하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 2 당사자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동시에 여행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면에 의해 특약을 체결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제2조 이 약관에서 “수주형 기획여행”이란 당사자 여행자로부터의 의뢰에 따라, 여행의 목적지 및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운송 또는 숙박 서비스의 내용과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여행대금의 금액을 정한 여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 이에 따라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 2 이 약관에서 “국내여행”이란 일본 국내만의 여행을 말하며, “해외여행”이란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말합니다.
- 3 본 편에서 “통신계약”이란 당사자 제휴하는 신용카드사(이하 “제휴사”)의 카드회원과 사이에서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신청을 받아 체결하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으로서 당사자 여행자에게 보유하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른 여행대금 등과 관련된 채권 또는 채무를 해당 채권 또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하는 날 이후에 별도 정하는 제휴사 카드회원약관에 따라 결제하는 것에 대해 여행자가 미리 승낙하고 또한 해당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여행대금을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후단, 제19조 제2항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말합니다.
- 4 이 약관에서 “카드이용일”이란 여행자 또는 당사자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른 여행대금 등의 지급 또는 환불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여행계약 내용)

- 제3조 당사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여행자가 당사자 정하는 여행일정에 따라 운송·숙박시설 등이 제공되는 운송, 숙박 기타 여행에 관한 서비스(이하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배하고 여정을 관리하는 일을 맡습니다.

(수배대행자)

- 제4조 당사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이행시 수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본 국내 또는 일본 국외의 다른 여행업자, 수배를 업으로 하는 자 기타 보조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제2장 계약의 체결

(기획서면의 교부)

- 제5조 당사는 당사에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여행자로부터 의뢰가 있을 경우는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의뢰의 내용에 따라 작성한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조건에 관한 기획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하 “기획서면”)을 교부합니다.
- 2 당사는 전항의 기획서면에서 여행대금의 내역으로 기획에 관한 수수료(이하 “기획요금”)의 금액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신청)

- 제6조 전조 제1항의 기획서면에 기재된 기획의 내용에 관해 당사에게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이하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당사가 별도 정하는 금액의 신청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2 전조 제1항의 기획서면에 기재된 기획의 내용에 관해 당사에 통신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여행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번호 기타 사항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제1항의 신청금은 여행대금(이 내역으로 금액이 명시된 기획요금 포함) 또는 취소료, 위약금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 4 수주형 기획여행 참가 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여행자는 계약 신청 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합니다.
- 5 전항의 신청에 따라 당사가 여행자를 위해 강구한 특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계약체결의 거부)

- 제7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단체행동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 여행자가 보유하는 신용카드가 무효인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과 관련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후사 카드회원약관에 따라 결제할 수 없는 경우
 - (3)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기업 또는 총회꾼 등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4) 여행자가 당사에게 폭력적인 요구행위, 부당한 요구행위, 거래에 관한 협박적인 언동 또는 폭력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5) 여행자가 소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해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기타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성립시기)

- 제8조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제6조 제1항의 신청금을 수령한 때 성립됩니다.
- 2 통신계약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는 취지의 통지가 여행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됩니다.

(계약서면의 교부)

- 제9조 당사는 전조에 정하는 계약의 성립 후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계약서면”)을 교부합니다.
- 2 당사는 제5조 제1항의 기획서면에서 기획요금의 금액을 명시한 경우는 해당 금액을 전항의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 3 당사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라 수배한 여정을 관리할 의무를 지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제1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바에 따릅니다.

(확정서면)

- 제10조 전조 제1항의 계약서면에 확정된 여행일정, 운송 또는 숙박시설의 명칭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면에서 이용 예정인 숙박시설 및 여행계획상 중요한 운송기관의 명칭을 한정, 열거하여 해당 계약서면을 교부한 후, 여행개시일 전일(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계산해서 소급해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여행개시일)까지의 해당 계약서면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들이 확정된 상황을 기재한 서면(이하 “확정서면”)을 교부합니다.
- 2 전항의 경우 수배상황의 확인을 희망하는 여행자로부터 문의가 있을 때에는 확정서면의 교부 전이라도 당사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에 응답합니다.
 - 3 제1항의 확정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사가 수배하고 여정을 관리할 의무를 지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해당 확정서면에 기재하는 바에 따라 특정됩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 제11조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얻어 기획서면,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여행자에게 교부하는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면 또는 확정서면의 교부를 대신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하 본 조에서 “기재사항”)을 제공한 경우,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 2 전항의 경우로서 여행자의 사용과 관련되는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전적으로 해당 여행자를 위해 제공하는 것에 한정됨)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한 것을 확인합니다.

(여행대금)

- 제12조 여행자는 여행개시일까지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기일까지 당사에게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금액의 여행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2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는 제휴사 카드에 의해 소정의 전표에 대하여 여행자의 서명 없이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금액의 여행대금을 지불 받습니다. 또한, 카드이용일은 여행계약 성립일로 합니다.

제3장 계약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제13조 여행자는 당사에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 내용 기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내용(이하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능한 한 여행자의 요구에 응합니다.

- 2 당사는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시설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단, 관공서의 명령, 당초 운행계획에 따르지 않은 운송서비스 제공,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여행자에게 사전에 신속하게 해당 사유에 관여할 수 없는 이유 및 해당 사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변경 후에 설명합니다.

(여행대금의 금액 변경)

제14조 수주형 기획여행을 실시할 때 이용하는 운송기관에 대해 적용받는 운임·요금(이하 본 조에서 “적용운임·요금”)이 현저한 경제정세의 변화 등으로 인해 수주형 기획여행의 기획서면 교부 시 명시한 시점에 유효한 것으로 공시되어 있는 적용운임·요금에 비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정도를 크게 초과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당사는 그 증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 2 당사는 전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대금을 증액하는 때에는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계산해서 소급해 15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여행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 3 당사는 제1항이 정하는 적용운임·요금의 감액이 이루어질 때는 같은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소 금액만큼 여행대금을 감액합니다.
- 4 당사는 전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여행실시에 필요한 비용(해당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 서비스에 대한 취소료, 위약금 기타 이미 지불했거나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포함)의 감소 또는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비용의 증가가 운송·숙박시설 등이 해당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시설 등의 좌석, 객실 기타 제반 시설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계약내용 변경 시 그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5 당사는 운송·숙박시설 등의 이용인원에 따라 여행대금이 다르다는 취지를 계약서면에 기재한 경우로서,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해당 이용인원이 변경되었을 때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바에 따라 여행대금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교체)

제15조 당사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는 당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2 여행자가 전항에서 정하는 당사의 승낙을 요구할 때는 당사 소정의 용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소정 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3 제1항의 계약상 지위의 양도는 당사의 승낙이 있을 때 효력이 생기고, 이후 여행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제3자는 여행자의 해당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합니다.

제4장 계약의 해지

(여행자의 해지권)

- 제16조 여행자는 언제든지 별표 제1에서 정하는 취소료를 당사에 지불하고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통신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는 제휴사 카드에 따라 소정의 전표에 대한 여행자의 서명 없이 취소료를 지불 받습니다.
- 2 여행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행개시 전에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고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당사에 의해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다만, 그 변경이 별표 제2 상란에 열거하는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일 경우에 한합니다.
 -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대금이 증액된 경우
 - (3)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시설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단, 관공서의 명령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해지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매우 큰 경우
 - (4) 당사가 여행자에게 제10조 제1항의 기일까지 확정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 (5)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3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 해당 여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때 또는 당사가 그 사실을 알렸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고 여행 서비스의 해당 제공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4 전항의 경우 당사는 여행대금 중 여행 서비스의 해당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부분과 관련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다만, 전항의 경우가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해당 여행 서비스에 대해 취소료, 위약금 기타 이미 지불했거나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관련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당사의 해지권 등 – 여행개시 전의 해지)

- 제17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여행개시 전에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간병인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여행을 견딜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단체 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여행자가 계약내용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 (4) 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서 필요한 강설량 등 여행실시조건으로 계약체결 시 명시된 것이 성취되지 않을 우려가 매우 큰 경우
 - (5)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시설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단,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해지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매우 큰 경우

(6)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여행자가 보유한 신용카드가 무효가 되는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과 관련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사 카드회원약관에 따라 결제할 수 없게 된 경우

(7) 여행자가 제7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2 여행자가 제12조 제1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기일까지 여행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일의 다음날에 여행자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여행자는 당사에게 전조 제1항에서 정하는 취소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의 해지권-여행개시 후 해지)

제18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여행개시 후라도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간병인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행의 지속을 견딜 수 없는 경우

(2) 여행자가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안내원 기타 인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당사 지시에 대한 위배, 이러한 자 또는 동행하는 다른 여행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단체행동의 규율을 어지럽히고 해당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방해하는 경우

(3) 여행자가 제7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시설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단,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여행의 지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2 당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와 여행자 사이의 계약 관계는 장래를 향하여만 소멸됩니다. 이 경우 여행자가 이미 제공받은 여행 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3 전항의 경우 당사는 여행대금 중 여행자가 아직 그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금액에서 해당 여행 서비스에 대한 취소료, 위약금 기타 이미 지불했거나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관련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여행대금의 환불)

제19조 당사는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대금이 감액된 경우 또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로서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여행개시 전 해지에 따른 환불인 경우에는 해지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개시 후의 해지에 따른 환불인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종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 2 당사는 여행자와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대금이 감액된 경우 또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에 따라 통신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휴사 카드회원약관에 따라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개시 전의 해지에 따른 환불인 경우에는 해지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개시 후 해지에 따른 환불인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종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환불할 금액을 통지하며, 여행자에게 해당 통지를 한 날을 카드이용일로 합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28조 또는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 또는 당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 후 귀환 수배)

- 제20조 당사는 제1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여행개시 후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지한 경우 여행자의 요구에 따라 여행자가 해당 여행의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행 서비스의 수배를 제공합니다.
- 2 전항의 경우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5장 단체·그룹계약

(단체·그룹계약)

- 제21조 당사는 같은 코스를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이하 “계약책임자”)를 정해 신청한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에 대해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약책임자)

- 제22조 당사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책임자가 그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이하 “구성자”)의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단체·그룹과 관련된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 및 제26조 제1항의 업무는 해당 계약책임자와의 사이에서 진행합니다.
- 2 계약책임자는 당사가 정하는 날까지 구성자 명단을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3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구성자에 대해 실제로 부담하거나 장래에 부담하는 것이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 여행개시 후에는 미리 계약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자를 계약책임자로 간주합니다.

(계약 성립의 특칙)

- 제23조 당사는 계약책임자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신청금의 지급을 받지 않고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금의 지급을 받지 않고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는 계약책임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고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은 당사가 해당 서면을 교부한 때에 성립합니다.

제6장 여정관리

(여정관리)

- 제24조 당사는 여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행자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당사가 여행자와 이와 다른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여행자가 여행 중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른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2) 전호의 조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서비스를 수배할 것. 이 경우 여행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여행일정이 당초 여행일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 또한, 여행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여행 서비스가 당초 여행 서비스와 동일하도록 노력할 것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

(당사의 지시)

제25조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 여행종료까지의 기간 동안 단체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안내원 등의 업무)

제26조 당사는 여행의 내용에 따라 안내원 기타 인원을 동행시켜 제24조 각 호에 열거하는 업무 기타 해당 수주형 기획여행에 부수해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 2 전항의 안내원 기타 인원이 같은 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보호조치)

제27조 당사는 여행 중인 여행자가 질병, 상해 등으로 보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것이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하며 여행자는 해당 비용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7장 책임

(당사의 책임)

제28조 당사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이행시 당사 또는 당사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배를 대행하게 한 자(이하 “수배대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손해발생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2년 이내에 당사에게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2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시설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단,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당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당사는 수하물에 대해 발생한 제1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당사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해 여행자 1인당 15만 엔을 한도(당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외)로 배상합니다.

(특별보상)

제29조 당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별지 특별보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가 수주형 기획여행 참가 중에 그 생명, 신체 또는 수하물에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해 미리 규

정한 금액의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2 전항의 손해에 대해 당사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책임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액의 한도에서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전항의 보상금은 해당 손해배상금으로 간주합니다.
- 3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당사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전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는 보상금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감축합니다.
- 4 당사의 수주형 기획여행 참여 중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여행대금을 받고 당사가 실시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서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내용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여정보증)

제30조 당사는 별표 제2 상란에 열거하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변경(운송·숙박시설 등이 해당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시설 등의 좌석, 방 기타 제반 시설의 부족이 발생한 것을 제외)을 제외)이 발생한 경우는 여행대금에 같은 표 하란에 기재된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변경보상금을 여행종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변경에 대해 당사에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한 변경

- 가. 천재지변
- 나. 전란
- 다. 폭동
- 라. 관공서 명령
- 마. 운송·숙박시설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단
- 바. 당초 운행계획에 따르지 않은 운송서비스 제공
- 사. 여행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의 해당 변경된 부분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해당 해지된 부분과 관련된 변경

- 2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변경보상금의 금액은 여행자 1명에 있어 하나의 수주형 기획여행에 대해 여행대금에 15% 이상의 당사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여행자 1명에 있어 하나의 수주형 기획여행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변경보상금의 금액이 천엔 미만인 경우 당사는 변경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당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해당 변경에 대해 당사에게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명확해진 경우에는 여행자는 해당 변경과 관련된 변경보상금을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의 금액과 여행자가 반환해야 하는 변경보상금의 금액을 상계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여행자의 책임)

제31조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여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2 여행자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여행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내용에 대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3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기 위해 만일 계약서면과 다른 여행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는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그 사실을 당사, 당사의 수배대행자 또는 해당 여행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8장 변제업무보증금

(변제업무보증금)

제32조 당사는 일반사단법인 일본여행업협회(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초메 3번 3호)의 보증사원입니다.

- 2 당사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자는 그 거래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전항의 일반사단법인 일본여행업협회가 공탁하고 있는 변제업무보증금으로부터 7,000만엔에 달할 때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당사는 여행업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단법인 일본여행업협회에 변제업무보증금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은 공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9장 일반조항

(언어)

제33조 이 약관은 일본어와 한국어로 작성되며, 양 언어 간 의미의 상충이 있을 경우 일본어가 우선됩니다.

별표 제1 취소료(제16조 제1항 관련)

1. 국내여행에 관련된 취소료

구분	취소료
(1) 다음 항 이외의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가. 나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열거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당사가 계약서면에서 기획 요금의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기획요금에 상당한 금액
나.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계산해서 소급해 20일째(당일여행의 경우는 1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나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20% 이내
다.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계산해서 소급해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다목부터 마목까지에서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30% 이내
라. 여행개시일 전날에 해지하는 경우	여행대금의 40% 이내
마. 여행개시 당일에 해지하는 경우(마목에서 열거하는 경우는 제외함)	여행대금의 50% 이내
바. 여행개시 후 해지 또는 연락 없는 불참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2) 전세선박을 이용하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해당 선박에 관련된 취소료 규정에 따릅니다.
비고: (1) 취소료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본 표의 적용시 “여행개시 후”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개시한 때” 이후를 말합니다.	

2. 해외여행에 관련된 취소료

구분	취소료
(1) 일본 출국 시 또는 귀국 시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다음 항에서 열거하는 여행계약은 제외함)	
가.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열거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당사가 계약서면에서 기획 요금의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기획요금에 상당한 금액
나.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계산해서 소급해 3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다목 및 라목에서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20% 이내

구분	취소료
다. 여행개시일 전전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라목에서 열거하는 경우는 제외함)	여행대금의 50% 이내
라. 여행개시 후 해지 또는 연락 없는 불참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2) 전세항공기를 이용하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가. 나목부터 마목까지에서 열거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당사가 계약서면에서 기획 요금의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기획요금에 상당한 금액
나.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계산해서 소급해 9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다목부터 마목까지에서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20% 이내
다.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계산해서 소급해 3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라목 및 마목에서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50% 이내
라.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계산해서 소급해 2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마목에서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80% 이내
마.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계산해서 소급해 3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해지 또는 연락 없는 불참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3) 일본 출국 시 및 귀국 시 선박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해당 선박에 관련된 취소료 규정에 따릅니다.	
주: “성수기”란 12월 20일부터 1월 7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및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비고: (1) 취소료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본 표의 적용시 “여행개시 후”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개시한	

별표 제2 변경보상금(제30조 제1항 관련)

변경보상금의 지급이 필요한 변경	1건 당 비율(%)	
	여행개시전	여행개시후
1.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개시일 또는 여행종료일의 변경	1 . 5	3 . 0
2. 계약서면에 기재한 입장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레스토랑 포함) 기타 여행 목적지 변경	1 . 0	2 . 0
3.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등급 또는 시설 보다 낮은 요금으로 변경(변경 후 등급 및 시설요금의 합계액이 계약서면에 기재한 등급 및 시설 해당 금액을 하회할 경우에 한함)	1 . 0	2 . 0
4.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 변경	1 . 0	2 . 0
5.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 여행개시지 공항 또는 여행종료지 공항의 다른 항공편으로 변경	1 . 0	2 . 0
6.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와 일본 국외 사이 직행편의 환승편 또는 경유편으로 변경	1 . 0	2 . 0
7.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시설의 종류 또는 명칭 변경	1 . 0	2 . 0
8.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시설의 객실 종류, 시설, 경관 기타 객실 조건 변경	1 . 0	2 . 0
<p>주1. “여행개시 전”이란 해당 변경에 대해 여행개시일 전날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하며 “여행개시 후”란 해당 변경에 대해 여행개시 당일 이후에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합니다.</p> <p>주2. 확정서면이 교부된 경우에는 “계약서면”으로 되어있는 것을 “확정서면”으로 대체한 후에 이 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면의 기재내용과 확정서면의 기재내용 사이 또는 확정서면의 기재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 서비스 내용 사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각각의 변경에 대해 1건으로 취급합니다.</p> <p>주3. 제3호 또는 제4호에 열거하는 변경과 관련된 운송기관이 숙박시설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경우는 1박당 1건으로 취급합니다.</p> <p>주4. 제4호에 열거하는 운송기관의 회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등급 또는 시설이 보다 높은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p> <p>주5. 제4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열거하는 변경이 1승차선 등 또는 1박 중에서 복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1승차선 등 또는 1박당 1건으로 취급합니다.</p>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1장 보상금 등의 지급

(당사의 지급책임)

- 제1조 당사는 당사가 실시하는 기획여행에 참가하는 여행자가 그 기획여행 참가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이하 “사고”라)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본 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사망보상금, 후유장애보상금, 입원위로금 및 통원위로금(이하 “보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 2 전항의 상해에는 신체 외부로부터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고 일시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경우 급격히 발생하는 중독증상(계속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발생하는 중독증상 제외)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균성식품중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 제2조 본 규정에서 “기획여행”이란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편 제2조 제1항 및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편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본 규정에서 “기획여행 참가 중”이란 여행자가 기획여행에 참가할 목적으로 당사가 미리 수배한 승차권류 등에 의해 제공되는 해당 기획여행일정에서 정하는 최초 운송·숙박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 운송·숙박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완료한 때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미리 정해진 기획여행의 코스에서 이탈하는 경우 이탈 및 복귀 예정 일시를 미리 당사에 신고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이탈 시부터 복귀 예정 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기획여행 참가 중”으로 하고 또한 여행자가 이탈 및 복귀 예정 일시를 미리 당사에 신고하지 않고 이탈했을 경우 또는 복귀 예정 없이 이탈했을 경우는 그 이탈 시부터 복귀 시까지의 사이 또는 그 이탈한 때로부터 후에는 “기획여행 참가 중”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획여행일정에 여행자가 당사의 수배와 관련된 운송·숙박시설 등의 서비스 제공을 전혀 받지 않는 날(여행지의 표준시에 따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취지 및 해당 날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이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위로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취지를 계약서면에 명시한 경우는 해당 날은 “기획여행 참가 중”으로 하지 않습니다.
- 3 전항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시작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안내원, 당사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를 하는 경우는 그 접수 완료 시
 - (2) 전호의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초 운송·숙박시설 등이
 - 가. 항공기인 경우 승객만 입장할 수 있는 비행장 구내의 수하물검사 등 완료 시
 - 나. 선박인 경우 승선수속 완료 시
 - 다. 철도인 경우 개찰 종료 시 또는 개찰이 없는 경우 해당 열차 승차 시
 - 라. 차량인 경우 승차 시
 - 마. 숙박시설인 경우 해당 시설 입장 시

바. 숙박시설 이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절차 종료 시로 합니다.

4 제2항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완료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안내원, 당사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해산을 알리는 경우는 그 알림을 전달 시
- (2) 전호의 해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 운송·숙박시설 등이
 - 가. 항공기인 경우 승객만 입장할 수 있는 비행장 구내로부터 퇴장 시
 - 나. 선박인 경우 하선 시
 - 다. 철도인 경우 개찰 종료 시 또는 개찰이 없는 경우 해당 열차 하차 시
 - 라. 차량인 경우 하차 시
 - 마. 숙박시설인 경우 해당 시설로부터 퇴장 시
 - 바. 숙박시설 이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시설로부터 퇴장 시로 합니다.

제2장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1)

제3조 당사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유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여행자의 고의.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자의 고의. 다만, 그 사람이 사망보상금의 일부 수령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여행자의 자살행위, 범죄행위 또는 투쟁행위.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 여행자가 법령에서 규정된 운전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5) 여행자가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안 발생한 사고.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6) 여행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7) 여행자의 임신, 출산, 조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조치. 다만, 당사가 보상해야 할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8) 여행자의 형 집행 또는 구류, 입감 중에 발생한 사고
-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정권탈취, 내란, 무장반란 기타 이와 유사한 사변 또는 폭동(이 규정에서는 군중 또는 다수인의 집단 행동으로 인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구에서 현저하게 평온이 훼손되어 치안 유지상 중대한 사태로 인정되는 상태를 말함)
- (10) 핵연료물질(사용 후 연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러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제9호 및 제10호의 사유에 수반해 발생한 사고 또는 이에 따른 질서 혼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12)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조사 또는 방사능오염

2 당사는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경부중후군(소위 “채찍질 손상”) 또는 요통으로 타각 증상이 없는 것에 대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2)

제4조 당사는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에는 전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지진, 분화 또는 해일

(2) 전호의 사유에 수반해 발생한 사고 또는 이에 따른 질서의 혼란에 기초해 발생한 사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3)

제5조 당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각 호의 행위가 당사가 미리 정한 기획여행의 여행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호의 행위가 해당 여행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 이외의 기획여행 참가 중에 같은 종류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1) 여행자가 별표 제1에서 정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2) 여행자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모터보트에 의한 경기, 경쟁, 흥행(모두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 또는 조종을 말함)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다만,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해 도로상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획여행의 여행일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보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3) 항공운송사업자가 노선을 정해 운행하는 항공기(정기편이든 부정기편이든 상관없음) 이외의 항공기를 여행자가 조종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4)

제5조의2 당사는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사망보상금의 일부 수령인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기업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하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반사회적 세력에 대해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공여하는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반사회적 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반사회적 세력과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관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보상금 등의 종류 및 지급금액

(사망보상금의 지급)

제6조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자 1명에 대해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에서는 2,500만엔,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에서는 1,500만엔(이하 “보상금액”)을 사망보상금으로 여행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여행자에 대해 이미 지급한 후유장애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애보상금의 지급)

제7조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후유장애(신체에 남겨진 장애에도 회복할 수 없는 기능의 중대한 장애 또는 신체 일부의 결손으로 그 원인이 된 상해가 치유된 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자 1명당 보상금액에 별표 제2의 각 호에 열거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후유장애보상금으로 여행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행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해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는 사고일로부터 181일째의 의사 진단에 따라 후유장애의 정도를 인정하고 후유장애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3) 별표 제2의 각 호에 열거하지 않은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여행자의 직업, 연령,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 정도에 따라 별표 제2의 각 호의 구분에 준해 후유장애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 제2의1(3), 1(4), 2(3), 4(4) 및 5(2)에서 열거하는 기능 장애에 이르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는 후유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동일한 사고에 의해 2종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는 그 각각에 대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 제2의7, 8 및9에서 규정하는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1지별 후유장애보상금은 보상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 (5) 전 각 항에 따라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후유장애보상금의 금액은 여행자 1명에 대해 1기획여행당 보상금액으로 한도로 합니다.

(입원위로금의 지급)

제8조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어 그 직접적인 결과로 평상시 업무에 종사하거나 평상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입원(의사에 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므로 병원 또는 진료소에 들어가 수시로 의사의 관리 하에서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음)한 경우에는 그 일수(이하 “입원일수”)에 대해 다음 구분에 따라 입원위로금을 여행자에게 지급합니다.

- (1)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 가. 입원일수 180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40만엔
 - 나. 입원일수 90일 이상 180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 20만엔
 - 다. 입원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 10만엔
 - 라. 입원일수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 4만엔
- (2)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가.	입원일수 180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20만엔
나.	입원일수 90일 이상 180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	10만엔
다.	입원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	5만엔
라.	입원일수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	2만엔

- 2 여행자가 입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표 제3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태에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 적용상 입원일수로 간주합니다.
- 3 당사는 여행자 1명에 대해 입원위로금과 사망보상금 또는 입원위로금과 후유장애보상금을 중복해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통원위로금의 지급)

제9조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평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평상시 생활에 지장이 발생하고 통원(의사에 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병원 또는 진료소에 다니며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왕진 포함)을 말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은)한 경우 그 일수(이하 “통원일수”)가 3일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일수에 대해 다음 구분에 따라 통원위로금을 여행자에게 지급합니다.

(1)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가.	통원일수 90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10만엔
나.	통원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	5만엔
다.	통원일수 3일 이상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	2만엔

(2)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가.	통원일수 90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5만엔
나.	통원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	2.5만엔
다.	통원일수 3일 이상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	1만엔

- 2 여행자가 통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골절 등 상해를 입은 부위를 고정하기 위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깁스 등을 상시적으로 장착한 결과 평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평상시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했다고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에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 적용상 통원일수로 간주합니다.
- 3 당사는 평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평상시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해가 치료된 이후의 통원에 대해서는 통원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의 통원에 대해서는 통원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당사는 여행자 1명에 대해 통원위로금과 사망보상금 또는 통원위로금과 후유장애보상금을 중복해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입원위로금 및 통원위로금 지급에 관한 특칙)

제10조 당사는 여행자 1명에 대해 입원일수 및 통원일수가 각각 1일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위로금 중 금액이 큰 것(같은 금액인 경우에는 제1호에 열거하는 사항)만을 지급합니다.

- (1) 해당 입원일수에 대해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입원위로금
- (2) 해당 통원일수(당사가 입원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 중의 것을 제외)에 해당 입원일수를 더한 일수를 통원일수로 간주한 후 해당 일수에 대해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통원위로금

(사망의 추정)

제11조 여행자가 탑승하는 항공기나 선박이 실종된 후 또는 조난당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도 여전히 여행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공기나 선박이 실종된 날 또는 조난당한 날에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른 신체 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

제12조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신체 장애나 질병의 영향에 의해 또는 제1조의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의 상해가 중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영향이 없었던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해 이를 지급합니다.

제4장 사고발생 및 보상금 등 청구절차

(상해 정도 등에 관한 설명 등의 청구)

- 제13조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은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상해의 정도, 그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여행자의 신체 진료 또는 사체 검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이러한 요구에 협력해야 합니다.
- 2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해야 하는 자는 당사가 관여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제1조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의 정도, 그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 등에 대해 당사에게 해당 사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 3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자가 당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그 설명이나 보고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당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등의 청구)

제14조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받을 자가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당사 소정의 보상금 등 청구서 및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사망보상금 청구의 경우
 - 가. 여행자의 호적등본과 법정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인감증명서
 - 나. 공공기관(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고증명서
 - 다. 여행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2) 후유장애보상금 청구의 경우

- 가. 여행자의 인감증명서
- 나. 공공기관(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고증명서
- 다. 후유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3) 입원위로금 청구의 경우

- 가. 공공기관(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고증명서
- 나. 상해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다. 입원일수 또는 통원일수를 기재한 병원 또는 진료소의 증명서류

(4) 통원위로금 청구의 경우

- 가. 공공기관(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고증명서
- 나. 상해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다. 입원일수 또는 통원일수를 기재한 병원 또는 진료소의 증명서류

2 당사는 전항 이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 또는 전항의 제출 서류의 일부 생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출 서류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당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위)

제15조 당사가 보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도 여행자 또는 그 상속인이 여행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 제3자에 대해 보유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제5장 휴대품 손해보상

(당사의 지불책임)

제16조 당사는 당사가 실시하는 기획여행에 참가하는 여행자가 그 기획여행 참가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그 소유의 소지품(이하 “보상대상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 본 장의 규정에 따라 휴대품 손해보상금(이하 “손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1)

제17조 당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여행자의 고의.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여행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 다만, 여행자에게 손해보상금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여행자의 자살행위, 범죄행위 또는 투쟁행위.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 여행자가 법령에서 정한 운전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5) 여행자가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안 발생한 사고.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6)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다만, 화재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합니다.
- (7) 보상대상품의 하자. 다만, 여행자 또는 이를 대신해 보상대상품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도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제외합니다.
- (8) 보상대상품의 자연적인 소모, 녹, 곰팡이, 변색, 쥐·벌레에 의한 손상 등
- (9) 단순한 외관손상으로 보상대상품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손해
- (10) 보상대상품인 액체의 유출. 다만, 그 결과로 다른 보상대상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1) 보상대상품을 두고 내리거나 분실
- (12) 제3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열거하는 사유

2 당사는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지진, 분화 또는 해일
- (2) 전항의 사유에 수반해 발생한 사고 또는 이에 따른 질서의 혼란에 기초해 발생한 사고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2)

제17조의2 당사는 여행자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반사회적 세력에 대해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반사회적 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법인인 경우 반사회적 세력이 그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기타 반사회적 세력과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상대상품 및 그 범위)

제18조 보상대상품은 여행자가 기획여행 참가 중에 휴대하는 그 소유의 소지품에 한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은 보상대상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현금, 수표 기타 유가증권, 인지, 우표 기타 이에 준하는 것
- (2)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
- (3) 고본, 설계서, 도안, 장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CD-ROM, 광디스크 등 정보기기(컴퓨터 및 그 단말장치 등의 주변기기)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된 것 포함)
- (4) 선박(요트, 모터보트 및 보트 포함),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해당 부속품
- (5) 산악 등반용구, 탐험용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6) 의치, 의지, 콘택트렌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7) 동물 및 식물
- (8) 기타 당사가 미리 지정하는 것

(손해액 및 손해보상금 지불금액)

제19조 당사가 손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액(이하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곳 및 시점에 보상대상품의 가액 또는 보상대상품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수선비 및 다음 조 제3항의 비용 합계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 2 보상대상품의 1개 또는 1쌍에 대한 손해금액이 1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그 자체의 손해액을 10만 엔으로 간주해 전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3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손해보상금의 금액은 여행자 1명에 대해 1 기획여행당 15만 엔으로 한도로 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여행자 1명에 대해 1회 사고당 3천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는 손해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손해의 방지 등)

제20조 여행자는 보상대상품에 대해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경감에 노력할 것
- (2) 손해의 정도,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 및 여행자가 손해를 입은 보상대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의 유무를 지체없이 당사에 통지할 것
- (3) 여행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에 관해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
- 2 당사는 여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 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방지경감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또한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득해야 하는 권리의 행사에 따라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합니다.
- 3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 (1)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소요된 비용 중 당사가 필요하거나 유익했다고 인정할 경우
 - (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필요한 비용

(손해보상금의 청구)

제21조 여행자는 손해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당사 소정의 손해보상금 청구서 및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경찰서 또는 이를 대체할 제3자의 사고증명서
- (2) 보상대상품의 손해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

- 2 여행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출서류에 대해 고의로 부실함을 표시하거나 그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제3자로 하게 한 경우도 동일하게 봄)에는 당사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제22조 제16조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는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보상금의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위)

제23조 당사가 손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에 대해서 여행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사가 여행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의 금액 한도내에서 당사에게 이전합니다.

별표 제1(제5조 제1호 관련)

산악등반(피켈, 아이젠, 자일, 망치 등의 등산용구를 사용하는 것), 루지, 봅슬레이,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더 탑승, 초경량비행장치(모터행글라이더, 마이크로라이트기, 울트라라이트기 등) 탑승 자이로플레인 탑승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한 운동

별표 제2(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관련)

1. 눈의 장애	
(1) 두 눈이 실명한 경우	100%
(2) 한 눈이 실명한 경우	6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가 된 경우	5%
(4) 한 눈이 시야협착(정상 시야각도 합계 60%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함)이 된 경우	5%
2. 귀의 장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	30%
(3)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에서 통상적인 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5%
3. 코의 장애	
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긴 경우	20%
4. 씹어먹는 기능, 말하는 기능의 장애	
(1)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긴 경우	35%
(3)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장애를 남긴 경우	15%
(4) 치아에 5개 이상 결손이 생긴 경우	5%
5. 외모(안면, 머리, 경부를 말함)의 추상(추한 모습)	
(1) 외모에 현저한 추상을 남긴 경우	15%
(2) 외모에 추상(안면에서는 직경 2cm 흉터, 길이 3cm 선상 흉터 정도를 말함)을 남긴 경우	3%
6. 척추의 장애	
(1) 척추에 현저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남긴 경우	40%
(2) 척추에 운동장애를 남긴 경우	30%
(3) 척추에 기형을 남긴 경우	15%

7. 팔(손 관절 이상을 말함), 다리(발 관절 이상을 말함)의 장애 (1) 한 팔 또는 한 다리를 잃은 경우 (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 또는 3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3)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에 장애를 남긴 경우	60% 50% 35% 5%
8. 손가락의 장애 (1) 한 손의 첫째손가락을 지관절(지절간관절) 이상으로 잃은 경우 (2) 한 손의 첫째손가락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긴 경우 (3) 첫째손가락 이외의 1개 손가락을 제2지관절(원위지절간관절) 이상으로 잃은 경우 (4) 첫째손가락 이외의 1개 손가락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긴 경우	20% 15% 8% 5%
9. 발가락의 장애 (1)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발가락관절(지절간관절) 이상으로 잃은 경우 (2) 한 발의 첫째발가락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긴 경우 (3) 첫째발가락 이외의 한 발가락을 제2족지관절(원위지절간관절) 이상으로 잃은 경우 (4) 첫째발가락 이외의 한 발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긴 경우	10% 8% 5% 3%
10. 기타 신체의 현저한 장애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100%
주: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 중 “이상”이란 해당 관절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분을 말합니다.	

별표 제3(제8조 제2항 관련)

- (1) 두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가 된 경우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잃은 경우
 - (3) 두 귀의 청력을 잃은 경우
 - (4) 두 팔의 손관절 이상의 모든 관절 기능을 잃은 경우
 -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경우
 - (6)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신체의 자유가 주로 섭식, 세면 등의 기거동작에 한정된 경우
 - (7) 신경계통 또는 정신장애로 신체의 자유가 주로 섭식, 세면 등 기거동작에 한정된 경우
 - (8) 기타 상기 부위의 합병장애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주로 섭식, 세면 등 기거동작에 한정된 경우
- (주) 제4호의 규정 중 “이상”이란 해당 관절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분을 말합니다.

수배여행계약 편

제1장 총칙

(적용범위)

- 제1조 당사자 여행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수배여행계약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 2 당사자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동시에 여행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면에 의해 특약을 체결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제2조 이 약관에서 “수배여행계약”이란 당사자 여행자의 위탁에 의해 여행자를 위해 대리, 매개 또는 중개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운송·숙박시설 등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 기타 여행에 관한 서비스(이하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배하는 것을 말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2 이 약관에서 “국내여행”이란 일본 국내만의 여행을 말하며, “해외여행”이란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말합니다.
- 3 이 약관에서 “여행대금”이란 당사자 여행 서비스를 수배하기 위해서 운임, 숙박료 기타 운송·숙박시설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당사 소정의 여행업무 처리요금(변경절차요금 및 취소절차요금 제외)을 말합니다.
- 4 이 편에서 “통신계약”이란 당사자 제휴하는 신용카드사(이하 “제휴사”)의 카드회원과의 사이에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신청을 받아 체결하는 수배여행계약으로서 당사자 여행자에게 보유하는 수배여행계약에 따른 여행대금 등과 관련된 채권 또는 채무를 해당 채권 또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하는 날 이후에 별도 정하는 제휴사 카드회원약관에 따라 결제하는 것에 대해 여행자가 미리 승낙하고 여행대금 등을 제16조 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배여행계약을 말합니다.
- 5 이 약관에서 “카드이용일”이란 여행자 또는 당사자 수배여행계약에 따른 여행대금 등의 지급 또는 환불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수배채무의 종료)

- 제3조 당사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여행 서비스를 수배한 경우 수배여행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채무 이행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만원, 휴업, 조건 부적당 등의 사유에 의해 운송·숙박시설 등과의 사이에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도, 당사자 그 의무를 완수한 경우 여행자는 당사자에게 당사 소정의 여행업무 처리요금(이하 “처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카드이용일은 당사자 운송·숙박시설 등과의 사이에서 여행 서비스 제공을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취지를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수배대행자)

- 제4조 당사는 수배여행계약의 이행시 수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본 국내 또는 일본 국외의 다른 여행업자, 수배를 업으로 하는 자 기타 보조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제2장 계약의 성립

(계약의 신청)

- 제5조 당사와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신청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2 당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번호 및 의뢰하고자 하는 여행 서비스 내용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제1항의 신청금은 여행대금, 취소료 기타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계약체결의 거부)

- 제6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수배여행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 여행자가 보유하는 신용카드가 무효인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과 관련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사 카드회원약관에 따라 결제할 수 없는 경우
 - (2)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련 기업 또는 총회꾼 등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3) 여행자가 당사에게 폭력적인 요구행위, 부당한 요구행위, 거래에 관한 협박적인 언동 또는 폭력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4) 여행자가 소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해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5) 기타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성립시기)

- 제7조 수배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제5조 제1항의 신청금을 수령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 2 통신계약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제5조 제2항의 신청을 승낙하는 취지의 통지가 여행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됩니다.

(계약 성립의 특칙)

- 제8조 당사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서면에 의한 특약으로 신청금의 지급을 받지 않고 계약의 체결 승낙만으로 수배여행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 2 전항의 경우 수배여행계약의 성립시기는 전항의 서면에서 명확하게 합니다.

(승차권 및 숙박권 등의 특칙)

- 제9조 당사는 제5조 제1항 및 전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운송서비스 또는 숙박 서비스의 수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배여행계약으로서 여행대금과 교환으로 해당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표시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두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 전항의 경우 수배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계약서면)

- 제10조 당사는 수배여행계약 성립 후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계약서면”)을 교부합니다. 다만, 당사가 수배하는 모든 여행 서비스에 대해 승차권류, 숙박권 기타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표시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전항 본문의 계약서면을 교부한 경우 당사가 수배여행계약에 따라 수배할 의무를 지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해당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바에 따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 제11조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얻어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여행자에게 교부하는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계약서면의 교부를 대신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하 본 조에서 “기재사항”)을 제공한 경우,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 2 전항의 경우로서 여행자의 사용과 관련되는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전적으로 해당 여행자를 위해 제공하는 것에 한정됨)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한 것을 확인합니다.

제3장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계약내용의 변경)

- 제12조 여행자는 당사에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 내용 기타 수배여행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능한 한 여행자의 요구에 응합니다.
- 2 전항의 여행자의 요구에 의해 수배여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여행자는 이미 완료된 수배를 취소할 때 운송·숙박시설 등에 지불해야 할 취소료, 위약금 기타 수배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 당사가 정한 변경절차요금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수배여행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여행대금 증가 또는 감소는 여행자에게 귀속됩니다.

(여행자에 의한 임의해지)

- 제13조 여행자는 언제든지 수배여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배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자는 이미 여행자가 제공받은 여행 서비스의 대가로서 또는 아직 제공받지 않은 여행 서비스에 관한 취소료, 위약금 기타 운송·숙박시설 등에 이미 지불했거나 앞으로 지불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 당사에게 당사가 정한 취소절차요금 및 당사가 받을 수 있었던 처리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

제14조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배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여행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 (2)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여행자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가 무효가 되는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과 관련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사 카드회원약관에 따라 결제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여행자가 제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배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자는 아직 제공받지 못한 여행 서비스에 관한 취소료, 위약금 기타 운송·숙박시설 등에 대해 이미 지불했거나 앞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 당사에 게 당사 소정의 취소절차요금 및 당사가 받을 수 있었던 처리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

제15조 여행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행 서비스의 수배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수배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배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이미 제공받은 여행 서비스의 대가로서 운송·숙박시설 등에 이미 지불했거나 앞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여행대금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 3 전항의 규정은 여행자가 당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4장 여행대금

(여행대금)

제16조 여행자는 여행개시 전 당사가 정한 기간까지 당사에 여행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2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는 제휴사 카드로 소정의 전표에 여행자의 서명 없이 여행대금의 지불을 받습니다. 이 경우 카드이용일은 당사가确定的 여행 서비스 내용을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 3 당사는 여행개시 전에 운송·숙박시설 등의 운임·요금의 개정, 환율의 변동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행대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여행대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4 전항의 경우, 여행대금의 증가 또는 감소는 여행자에게 귀속됩니다.
- 5 당사는 여행자와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장 또는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제휴사 카드로 소정의 전표에 여행자의 서명 없이 해당 비용 등의 지불을 받습니다. 이 경우 카드이용일은 여행자가 당사에 지불해야 할 비용 등의 금액 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을 당사가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수배여행계약을 해지한 경우 여행자는 당사가 정한 기일까지 당사가 정한 지불방법에 따라 여행자가 당사에 지불해야 할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행대금의 정산)

제17조 당사는 당사가 여행 서비스를 수배하기 위해 운송·숙박시설 등에 지불한 비용 중 여행자의 부담으로 귀속되

는 비용 및 처리요금(이하 “정산여행대금”)과 여행대금으로 이미 수령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여행종료 후 다음 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여행대금을 정산합니다.

- 2 정산여행대금이 여행대금으로 이미 수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행자는 당사에게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3 정산여행대금이 여행대금으로 이미 수령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차액을 환불합니다.

제5장 단체 · 그룹수배

(단체 · 그룹수배)

제18조 당사는 같은 코스를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이하 “계약책임자”)를 정해 신청한 수배여행계약의 체결에 대해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약책임자)

제19조 당사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책임자가 그 단체 · 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이하 “구성자”)의 수배여행계약의 체결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단체 · 그룹에 관한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 및 제22조 제1항의 업무는 해당 계약책임자와의 사이에서 진행합니다.

- 2 계약책임자는 당사가 정하는 날까지 구성자의 명단을 당사에 제출하거나 그 인원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구성자에 대해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단체 · 그룹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 여행개시 후에는 미리 계약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자를 계약책임자로 간주합니다.

(계약 성립의 특칙)

제20조 당사는 계약책임자와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금의 지급을 받지 않고 수배여행계약의 체결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금의 지급을 받지 않고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는 계약책임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고 수배여행계약은 당사가 해당 서면을 교부한 때에 성립합니다.

(구성자의 변경)

제21조 당사는 계약책임자로부터 구성자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에 응합니다.

- 2 전항의 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여행대금의 증감 또는 감소 및 해당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성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내서비스)

제22조 당사는 계약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단체 · 그룹에 안내원을 동행시켜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안내원이 수행하는 안내 비스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미리 정해진 여행일정에 따라 단체 · 그룹행동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 합니다.
- 3 안내원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 4 당사가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책임자는 당사에 소정의 안내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6장 책임

(당사의 책임)

- 제23조 당사는 수배여행계약의 이행시 당사 또는 당사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배를 대행하게 한 자(이하 “수배대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손해발생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2년 이내에 당사에게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2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 · 숙박시설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단,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당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당사는 수하물에 대해 발생한 제1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한 경우에 한해 여행자 1인당 15만 엔을 한도(당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외)로 배상합니다.

(여행자의 책임)

- 제24조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여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2 여행자는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여행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수배여행계약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3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기 위해 만일 계약서면과 다른 여행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는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그 사실을 당사, 당사의 수배대행자 또는 해당 여행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7장 변제업무보증금

(변제업무보증금)

- 제25조 당사는 일반사단법인 일본여행업협회(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초메 3번 3호)의 보증사원입니다.
- 2 당사와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자는 그 거래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전항의 일반사단법인 일본여행업협회가 공탁하고 있는 변제업무보증금으로부터 7,000만엔에 달할 때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당사는 여행업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단법인 일본여행업협회에 변제업무보증금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은 공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8장 일반조항

(언어)

제26조 이 약관은 일본어와 한국어로 작성되며, 양 언어 간 의미의 상충이 있을 경우 일본어가 우선됩니다.

해외여행 수속대행계약 편

(적용범위)

- 제1조 당사자 여행자와 체결하는 해외여행 수속대행계약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 2 당사자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동시에 여행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체결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해외여행 수속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자)

- 제2조 당사자 해외여행 수속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자는 당사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또는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당사자 수탁하고 있는 다른 여행사의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 당사자 대리해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로 합니다.

(해외여행 수속대행계약의 정의)

- 제3조 이 약관에서 “해외여행 수속대행계약”이란 당사자 해외여행 수속대행에 대한 여행업무 처리요금(이하 “해외여행 수속대행요금”)을 수취할 것을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 (3) 기타 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계약의 성립)

- 제4조 당사자 해외여행 수속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자 소정의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당사자 제출해야 합니다.
- 2 해외여행 수속대행계약은 당사자 계약체결을 승낙하고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성립됩니다.
- 3 당사자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의 제출을 받지 않고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해외여행 수속대행계약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여행 수속대행계약은 당사자 계약체결을 승낙한 때에 성립됩니다.
- 4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 수속대행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기업 또는 총회꾼 등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2) 여행자가 당사자에게 폭력적인 요구행위, 부당한 요구행위, 거래에 관한 협박적인 언동 또는 폭력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3) 여행자가 소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해 당사자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4) 기타 당사자의 업무상 사정이 있는 경우

- 5 당사는 해외여행 수속대행계약 성립 후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해당 해외여행 수속대행계약에 의해 수탁한 대행 업무(이하 “수탁업무”)의 내용, 해외여행 수속대행요금의 금액, 그 징수 방법, 당사의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6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항의 서면 교부를 대신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하 본 조에서 “기재사항”)을 제공한 경우,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 7 전항의 경우로서 여행자의 사용과 관련되는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전적으로 해당 여행자를 위해 제공하는 것에 한정됨)에 기재 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한 것을 확인합니다.

(비밀유지 의무)

제5조 당사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행자의 의무)

제6조 여행자는 당사가 정한 기일까지 해외여행 수속대행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2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수탁업무에 필요한 서류, 자료 기타 물건(이하 “해외여행 수속서류 등”)을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3 당사가 수탁업무를 수행하며 일본 관공서, 주일외국공관 기타 기관에게 수수료, 사증료, 위탁료 기타 요금(이하 “사증료 등”)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당사에 해당 사증료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 4 위탁업무를 수행하며 우편비, 교통비 기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당사가 정한 기일까지 당사에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

제7조 여행자는 언제든지 해외여행 수속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외여행수속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해외여행 수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 (2)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제출된 해외여행 수속서류 등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 (3) 여행자가 해외여행 수속대행료, 사증료 등 또는 전조 제4항의 비용을 소정의 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 (4) 여행자가 제4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5) 제3조 제1호의 대행업무를 맡은 경우 여행자가 당사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여권, 사증 또는 재입국 허가(이하 “여권 등”)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여행 수속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자는 이미 지불한 사증료 등 및 전조 제4항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 당사가 이미 수행한 수탁업무에 관한 해외여행 수속대행요금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의 책임)

제8조 당사는 해외여행 수속대행계약의 이행시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손해발생의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6개월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었을 때에 한합니다.

2 당사는 해외여행 수속대행계약에 따라 여행자가 실제로 여권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것 및 관련 국가로의 출입국이 허가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여행자가 여권 등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관련 국가로의 출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언어)

제9조 이 약관은 일본어와 한국어로 작성되며, 양 언어 간 의미의 상충이 있을 경우 일본어가 우선합니다.

여행상담계약 편

(적용범위)

- 제1조 당사자 여행자와 체결하는 여행상담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 2 당사자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동시에 여행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여행상담계약의 정의)

- 제2조 이 약관에서 “여행상담계약”이란 당사자 상담에 대한 여행업무 처리요금(이하 “상담요금”)을 수취할 것을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1) 여행자가 여행계획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조언
 - (2) 여행계획의 작성
 - (3) 여행에 필요한 경비의 견적
 - (4) 여행지 및 운송·숙박시설 등에 관한 정보제공
 - (5) 기타 여행에 필요한 조언 및 정보제공

(계약의 성립)

- 제3조 당사자 여행상담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신청서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2 여행상담계약은 당사자 계약체결을 승낙하고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성립됩니다.
- 3 당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의 제출을 받는 대신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여행상담계약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상담계약은 당사자 계약체결을 승낙한 때에 성립됩니다.
- 4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여행상담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의 상담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여행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기업 또는 총회꾼 등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3) 여행자가 당사에게 폭력적인 요구행위, 부당한 요구행위, 거래에 관한 협박적인 언동 또는 폭력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4) 여행자가 소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해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5) 기타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는 경우

(상담요금)

- 제4조 당사자 제2조에 열거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여행자는 당사자 정한 기일까지 당사자 정한 상담요금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

제5조 당사는 여행자가 제3조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여행상담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책임)

제6조 당사는 여행상담계약의 이행시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6개월 이내에 당사에 통지를 한 경우에 한합니다.

2 당사는 당사가 작성한 여행계획에 기재된 운송·숙박시설 등에 대해 실제로 수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운송·숙박시설 등과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 기타 여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언어)

제7조 이 약관은 일본어와 한국어로 작성되며, 양 언어 간 의미의 상충이 있을 경우 일본어가 우선합니다.